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※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-659호(2021.12.17.)는 본 고시로 대체함

2021년 12월 21일
경상남도지사


1. 기 간 : 2021. 12. 22(수) 0시 ~ 2022. 1. 2(일) 24시
2. 효 력 : 2021. 12. 22(수) 0시부터
 - 1)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1.3.(월) 05시까지 적용
 - 2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적용예외 연령은 2022.2.1.(화)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~11세 이하로 적용
 - 3)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적용 시설의 수기명부 단독 운영 불가(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 조치는 2주간 계도기간(12.6.~12.19.) 부여

※ 단,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,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유지(계도기간 없이 수기 명부 불가)
3. 주요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
가. 적용대상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적용 시설
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▲ 식당·카페 ▲ 학원 등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멀티방 ▲ PC방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파티룸 ▲ 도서관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미적용 시설	
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각 300㎡ 이상)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 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이·미용업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
기타시설	
▲ 종교시설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	

나. 처분대상자

-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- 경남도 내 모든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와 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

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사항

라.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

*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2, 붙임3, 붙임4, 붙임5 내용 확인

구분	주요 방역수칙
공통 방역수칙	
마스크 착용	▶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·실외에서 마스크 착용
기본방역수칙	▶ 방역수칙 게시·안내 ▶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▶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▶ 일 1회 이상 소독 ▶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
모임·행사·집회	
사적 모임	▶ <u>4명</u> 까지 모임 가능(미접종자·접종완료자 구분 없음)

구분	주요 방역수칙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적용 제외 ></p> <p>❶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</p> <p>❷ 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(돌봄종사자를 의미)</p> <p>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</p> <p>❹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는 포함)</p> <p>❺ 실외체육시설에서 '스포츠 경기 진행'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- 이 경우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(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(운영) 가능</p> <p>❻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(시합 등) 가능</p> <p>▶ (식당·카페에서는) 4명까지 모임 가능 - 단,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(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)</p>
기타 행사·모임	<p>▶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 까지 가능</p> <p>▶ 접종완료자 등*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299명 까지 가능</p> <p>* (접종완료자 등) ① 접종 완료자, ② PCR검사 음성자(48시간 이내), ③ 18세 이하, ④ 완치자 ⑤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</p>
1]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의무적용 시설	
<p>유흥시설 5종,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클럽·나이트) 콜라텍·무도장</p>	<p>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 ※ 21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p> <p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</p> <p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※ 수기명부 운영 금지</p> <p>※ 허가(신고) 받은 업종 불문, 사실상 유흥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포함</p>
<p>노래(코인)연습장 (뮤비방)</p>	<p>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 ※ 21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p> <p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p> <p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</p> <p>※ 노래(코인)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(예:뮤비방)은 노래(코인)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</p>

구분	주요 방역수칙
<p>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, 경륜·경정·경마장</p>	<p>▶ (운영시간)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, 카지노는 22시까지, 경륜·경마·경정은 제한없음 ※ 21시 또는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</p> <p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(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카지노) 제한적 허용</p> <p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 (단 카지노, 경륜·경정·경마장은 수기명부 운영 금지)</p>
<p>식당·카페 (홀덤펍)</p>	<p>▶ (운영시간) 21시까지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※ 21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* (식당·카페)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 포함)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</p> <p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)</p> <p>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p>
<p>영화관·공연장, PC방, 학원, 멀티방 (홀덤펍게임장)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파티룸</p>	<p>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*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※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* 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</p> <p>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* 파티룸은 취식가능,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 또는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p>
<p>실내스포츠경기 (관람)장</p>	<p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*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 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p>
<p>독서실, 스터디카페, 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</p>	<p>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p> <p>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</p> <p>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*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)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※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(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)</p>

구분	주요 방역수칙
2]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미적용 시설	
오락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22시까지 ※ 22시~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(집합제한) ▶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실외체육시설 상점·마트·백화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밀집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전시회·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6㎡당 1명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※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*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* 단,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, 별도 지정 공간에서만 섭취 허용 전시장 외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국제회의·학술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, 좌석 한 칸 띄우기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결혼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300명 미만 ※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적용 가능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
구분	주요 방역수칙
돌잔치, 장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·밀집도) 4㎡당 1명 준수 + 모임·행사 기준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 ~ 300명 미만 ▶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③ 기타시설	
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▶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▶ (밀집도)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%, 최대 299명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<u>접종완료자로만*</u> 구성 시 수용인원 70% 까지 * PCR음성자,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▶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▶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 ▶ (기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소 모 임) 사적모임(4명) 이내,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- (종교행사) 행사 일반 수칙 적용, <u>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 * 접종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- (기 타)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,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등 행위 금지 포함 기본방역수칙 준수
콜센터·물류센터	▶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안내
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*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
4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

-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, 시행규칙 제42조

5.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또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2)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8.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

시설명	담당부서(도)	연락처	비 고
▶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 ▶ 단란주점 ▶ 헌팅포차 ▶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, 돌잔치	식품의약과	211-5024	
▶ 콜라텍	예방안전과	211-5414	
▶ 노래연습장 ▶ PC방 ▶ 오락실·멀티방 ▶ 영화관	문화예술과	211-4534	
▶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과	211-3354	
▶ 공연장	문화예술과	211-4544	
▶ 놀이공원, 워터파크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실내체육시설, 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장)	체육지원과	211-4744	
▶ 결혼식장	가족지원과	211-5256	
▶ 장례식장	노인복지과	211-4873	
▶ 목욕업 ▶ 이·미용업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학원 ▶ 독서실 ▶ 스터디카페	통합교육추진단	211-3665	
▶ 마트·백화점 ▶ 백화점·대형마트	소상공인정책과	211-3434	
▶ 직업훈련기관	각 소관부서	-	
▶ 종교시설	문화예술과	211-4514	
▶ 노인요양시설	노인복지과	211-4875	
▶ 요양병원	식품의약과	211-5044	
▶ 정신병원	보건행정과	211-4935	
▶ 콜센터	노동정책과	211-3464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관광진흥법상)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공중위생법상)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어촌체험마을(민박)	섬어촌발전과	211-6173	
▶ 농어촌민박	농업정책과	211-6255	
▶ 농촌체험휴양마을	농업정책과	211-6254	

끝.